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조례를 통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의 탄력적 운용 근거 마련〉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8008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조례를 통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의 탄력적 운용 근거 마련	2
※ 참고자료	6

I. 제안경위

2026년 3월 31일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4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사장, 사업장 및 확성기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제기준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의 확대로 주거지역과 인접한 공사장이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소음·진동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주말·공휴일 등 특정시기의 규제를 강화해달라는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반면, 지역 축제나 연말·연시 문화행사, 상업지구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소음·진동 규제로 인해 확성기 등의 사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일률적인 규제가 오히려 지역의 활력을 저해한다는 지적 역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인구밀집도, 문화·경제 활성화 등 지역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로 규제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정온한 생활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관리를 통해 소음·진동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제4항, 제5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조례를 통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의 탄력적 운용 근거 마련

개정안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기준 설정·변경 시 의견수렴 및 장관 보고·공개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 ~ ② (생략) <u><신설></u>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u>지역별 인구밀집도, 지역 문화·경제 활성화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생활소음·진동의 탄력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보다 강화 또는 완화된 규제기준(대상 지역 및 기준의 적용시기를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다.</u>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설정·변경하는 경
<u><신설></u>	

<신 설>	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이 설정·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현행법은 공사장, 사업장 및 확성기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제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참고자료 참조).¹⁾

최근 도심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의 확대로 주거지역과 인접한

1)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4.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한다),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3. 제1항 각 호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4.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곳에서의 소음·진동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하여 규제 강화 요구와 함께, 지역축제·행사 등 상업지구에서의 확성기 사용 제한 등 일률적인 소음·진동 규제가 지역 활력을 저해한다는 주장과 함께 규제 완화 요구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례로써 소음의 규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생활소음·진동의 탄력적 관리를 통해 소음·진동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각 지방자치단체가 인구밀집도, 문화·경제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를 통해 규제기준을 강화·완화할 경우 지역 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소음·진동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또한, 개정안은 기준 변경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여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변경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규제 변경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정책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동 개정안에 대하여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규제기준이 다를 경우 동일한 행위임에도 규제(처분) 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불균형이 발생하여 규제가 완화된 지자체에 소음 유발 시설이 집중될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자체별 차등적인 기준 적용에 따른 행정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조례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설정

등에 대하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과의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조례로써 정할 수 있는 범위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음.²⁾

마지막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조례로써 정하는 규제기준 대상 및 적정 강화 또는 완화 범위 설정, 하위법령안 마련을 위해 동 개정안의 부칙 시행일(공포한 날)을 ‘1년이 경과한 날’로 수정의견을 제시한 바, 이를 참고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부 칙

개 정 안	수 정 안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u>1년이 경과한 날</u> 부터 시행한다.

문 의 처

02)6788-5546

2)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정안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별 인구밀집도, 지역 문화·경제 활성화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생활소음·진동의 탄력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보다 강화 또는 완화된 규제기준(대상지역 및 기준의 적용시기를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다.

※ 참고자료 :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대 상 지 역	시간대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 · 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 · 종합병원 · 공공도서관	확성기	옥 외 설 치	60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 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 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 사 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 외 설 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 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 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 사 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비고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6. 삭제

7.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
다.

가. 주거지역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
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8.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
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골프연습장업 및 야구장업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
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
홍주점영업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콜라
텍업